

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지원 필요

나. (재)구미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6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기관명 : (재)구미문화재단
- 2) 소재지 : 구미시 송정대로 120
- 3) 조직/구성 : 4팀 26명(현원 : 4팀 25명)
- 4) 출연금액 : 5,200백만원
- 5) 근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 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0조
 -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주요 사업

1)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

-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 및 청년예술인 육성 사업
-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사업
-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
-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
-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기획 사업

2)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

-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
-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
- 문화가 있는 마을 사업
- 시민문화 활동 지원 및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

3) 문화예술공간 운영

- 구미청년상상마루,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, 구미영상미디어센터, 구미생활문화센터, 금리단길 각산살롱, 야외무대 공연 운영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1) 구미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문화정책 및 문화 예술 사업 발굴·육성을 위해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
- 2) 구미시의 문화예술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·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재원 지원 필요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제20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,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구미문화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로 시비 100%로 추계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4차년도 (2029)	5차년도 (2030)	합계
세출	5,200	5,200	5,200	5,200	5,200	26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4차년도 (2029)	5차년도 (2030)	합계
시비	5,200	5,200	5,200	5,200	5,200	26,0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문화예술과 김명동(☎480-660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2026년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5,200	
인 건 비	1,49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수(대표이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0,340,000원 × 1년(1명) = 80,340,000원 · 보수(직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21,654,000원 × 1년(24명) = 821,654,000원 · 제수당(대표이사 및 직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67,245,000원 × 1년(24명) = 367,245,000원 · 퇴직급여 충당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40,620,000원 × 1년(24명) = 140,620,000원 · 평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8,976,000원 × 1회 = 88,976,000원
운 영 비	69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, 임차료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98,291,000원 × 1식 = 698,291,000원
사 업 비	3,0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예술인 활동지원사업 : 271,850,000원 ·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 <STAGE:G> : 77,050,000원 · 구미 지역작가 예술작품 임차·전시사업 : 62,520,000원 ·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: 168,940,000원 ·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(심화) : 29,800,000원 ·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: 59,535,000원 · 구미청년상상마루 운영 : 245,980,000원 ·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: 80,000,000원 ·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: 80,000,000원 ·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: 270,000,000원 ·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 : 150,000,000원 · 문화가 있는 마을 사업 : 120,000,000원 · 구미 아틀리에: 시민의 방 : 150,000,000원 · 구미 사계 뮤직워크 : 250,000,000원 · 구미생활문화센터 운영 : 380,000,000원 ·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운영 : 475,200,000원 · 금리단길 각산살롱 운영 : 102,000,000원 · 구미시 야외무대 공연운영 : 30,000,000원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과 장	박 향 목
	팀 장	박 병 호
	담 당 자	김 명 동 (480-6602)